

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83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1.

발의의원 : 김정태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여성농업인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, 지원체계, 시행계획수립 등
(안 제3~제5조)

다. 양성평등, 경영능력 향상 지원, 교육, 복지, 정착지원
(안 제6조~제10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여성농업인육성법」 제3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여성농업인”이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여성농업인단체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4. “여성농업인 관련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,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여성농업인은 농업·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함으로써 농업·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노력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할 때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체계)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전항의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양성평등)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)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·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
2.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
3.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
4.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

제8조(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)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·현장교육·부부공동교육
2.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
3.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

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이 창업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9조(여성농업인 복지 향상)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
2.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,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
3.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
4. 출산을 전·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
5.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
6.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
제10조(귀농·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) 군수는 귀농·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귀농·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
2. 귀농·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, 상담, 화합의 행사 추진
3. 귀농·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 문화 교육
4. 귀농·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